

투자권유준칙

2009. 2. 4.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투자권유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투자권유 임직원”이라 한다)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한다)이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는 이 항 및 이 준칙 전체에서 같다)의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회사는 협회가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따르거나 표준투자권유준칙의 내용을 배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에 일정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투자권유 담당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투자권유 임직원은 회사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판매교육을 이수한 자
2.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투자권유대행인은 법 제5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인 경우에는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이 준칙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및 협회관련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고지) 회사는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설명서 등을 이용해 집합투자상품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자의 구분) ①회사는 투자권유 이전에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5항에 의해 일반투자자로 이동이 가능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회사는 일반투자자로 이동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이동을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③일반투자자로 이동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로 이동할 수 없다.

④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이동 내역 및 일반투자자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투자권유

제5조(투자권유창구의 구분) 회사는 임직원의 담당업무, 성명 등을 창구에 표시하여 투자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창구와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창구가 구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권유의 일반원칙) 회사(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는 최선의 투자자이익 실현과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자신과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및 협회관련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적합성 원칙 등) ①회사(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 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해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대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일반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비해 위험의 정도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적합한 위험 수준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더 높은 위험 수준의 집합투자증권을 요구했다는 점,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 정도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위험이 높아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⑤일반투자자가 그 투자자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범위 내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제8조(설명의무) ①회사(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대상 등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특성, 구체적인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와 성격에 따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실적배당 및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당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일반투자자가 펀드의 투자위험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펀드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손실 금액, 운용자산 종류,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등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가 자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집합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회사가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집합투자증권(또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계약.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자가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이 원본을 초과할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 ①제8조에 불구하고 회사(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가격변동위험, 투자기업의 부도위험, 금리변동위험 등) 외에 추가적으로 환율변동위험이 따른다는 사실과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헤지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3.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증시상황 등의 특징

②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증시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2(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

①제8조에 불구하고 회사(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특성 외에 추가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구체적인 구조, 투자대상 등)
2.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추가적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투자위험
3. 투자대상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

②회사는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동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도록 교육 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권유의 금지) 회사(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4. 투자자(전문투자자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회사가 정하고,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행위

제 3 장 투자권유의 위탁

제11조(투자권유업무 위탁) ①회사는 법 제51조의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 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범위를 정함이 없이 투자권유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없다.

③투자권유대행인은 회사와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회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에는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투자권유 위탁계약) ①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과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업무의 범위
2.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투자권유 위탁계약 당사자인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3. 법 제50조에 따라 회사가 정한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한다는 내용
 4.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업무 수행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및 협회 관련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
- ③투자권유대행인은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와는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①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한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4.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5.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6.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감독규정 제 4-18조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7.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8.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9. 그 밖에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
- ②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시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투자권유대행인의 사전 고지의무) 투자권유대행인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투자권유를 위탁한 회사의 명칭
2. 투자권유를 위탁한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3.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회사가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
4.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5.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을 수 없다는 사실
6.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7. 제13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8.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

제15조(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감독) ①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관리담당자, 교육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집합투자증권 판매시장의 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1항의 투자권유대행기준에는 교육의 내용, 시기, 대상자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 4 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제16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①회사 및 투자권유 임직원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지점을 통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후 7영업일 이내에 투자권유 임직원 투자권유대행인에 의하여 수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협회관련규정 및 투자권유준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투자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인력현황 및 판매건수 등을 감안하여 확인대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판매중지 등 회사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회사는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상 공모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모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행위

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전에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운용회사, 출시에정일, 상품의 내용 등을 보도자료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
3. 회사의 다수 점포에서 특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다수의 자에게 투자권유하는 행위
4. 동일한 운용대상을 갖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 설정하게 하는 행위
5.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여 최저 가입금액을 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6. 동일한 집합투자규약을 사용하고 동일한 운용대상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6개월 이내에 다수의 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권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⑥회사는 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투자권유실적을 말한다)을 평가함에 있어 법규준수 및 민원발생 여부 등 판매의 질적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투자자와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금융상품·서비스 등과의 연계판매)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다른 금융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과 연계(이하 “연계판매”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계판매 행위가 금융관련법규 및 기타 법규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규제회피를 위한 행위가 아닐 것
2. 다른 금융상품 등과 연계판매시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또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
3.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게 특약 등으로 환매제한 등의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
4. 다른 금융상품 등과의 연계판매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않을 것

제18조(자금납입의 제한) 회사는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 등을 납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2.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회사가 선납하는 행위
3. 영업시간 종료 후 자금납입 또는 예약납입을 허용하는 행위

제19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임직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손실보전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2.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 등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③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감독규정 제4-18조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할 수 있다.

제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4.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거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8.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10. 제9호 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각 영업점에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거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등 투자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자기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게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자기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자기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자기에게 위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라.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는 행위

1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는 행위

13. 기타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

제21조(집합투자증권 판매 실명제) ①회사는 투자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계약 체결시 투자권유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성명, 직위,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 수시로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5 장 기타 영업행위준칙

제22조(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 ①회사(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는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2.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3. 투자자에게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 그 밖에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②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 특정 국가·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에 대한 투자비율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 설명 및 광고자료 등에 특정 국가·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투자권유행위 등 금지) 회사(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는 법 11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투자권유행위 또는 사전 예약판매행위를 하거나 판매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2(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회사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에게 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를 법령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회사가 증권신고서의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
3.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회사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

제24조(판매부대비용의 처리 절차) 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한 광고비·인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을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은 내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임직원 등의 교육) 회사는 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교

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강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투자권유 임직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투자자정보의 보관 및 이용제한

제26조(기록보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10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규정 등에서 보관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투자자의 일반정보
2. 약관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제공한 문서(서신, 안내문, 투자권유문서 등을 포함)
3. 투자계약서 또는 계좌계설 관련서류
4.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기록이 사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보존기간동안 투자자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거래 기록물
2. 회사가 당해 투자자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
3. 집합투자증권의 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의사표시자료의 사본

제27조(투자자정보의 이용금지) ①회사(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및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투자자의 정보를 자신의 고유업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사는 고유업무(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및 판매업무 이외의 업무를 말한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및 판매업무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자신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하

는데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장 보 칙

제28조(실명확인 및 특정금융거래보고) ①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특정금융거래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범죄행위 등 부적절한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받거나 투자자의 금융거래가 탈세나 자금세탁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수자금이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이거나, 당해 금융거래가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목적이라고 의심이 될 때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은 실명(소속·성명·직책·연락처)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자광고) ①회사가 영위업무 또는 집합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7조, 시행령 제60조 및 감독규정 제4-11조 및 제4-12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투자대상 국가 및 지역의 경제·증시 전망을 객관적인 발표·조사 자료 등에 근거하지 않고 예측하여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투자권유대행인은 판매광고를 할 수 없다.

제30조(판매행위 등의 점검) ①협회가 회사(투자권유 임직원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및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협회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자료 제출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회사 준법감시인은 판매행위준칙의 적정성 및 투자권유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준칙 준수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판매절차) ①회사는 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표준판매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표준판매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협회가 정한 별지 제1호의 표준판매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③회사의 준법감시인은 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표준판매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집합투자증권 잔고 통보) ①회사는 투자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 보유내역 및 평가금액 등(이하 “집합투자증권 잔고”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②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잔고 통보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발송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잔고 통보 지연 또는 불능
2. 주소기재오류, 메일박스 용량초과 등의 투자자 귀책사유

제33조(합의관할) 회사와 회사의 투자권유 임직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4조(기타)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감독규정 및 협회관련규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